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범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17

발의연월일: 2020. 7. 3.

발 의 자: 박범계·장철민·홍성국

고용진 • 이상민 • 송갑석

박영순 · 황운하 · 어기구

김남국 · 장경태 · 김승원

이수진 · 한준호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지식재산권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과 달리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, 그 가치를 평가하여 적 정한 손해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. 예컨대 특정 건물에 대한 가 치는 공시지가, 실거래가 등 여러 가지 평가지표 등으로 인해 침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용이한 반면, 상표권의 경우 그 상표가 갖는 경 제적 가치는 상표권자의 신용에 비례하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 손상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기 어려움.

상표권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구축한 신뢰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비단 상표권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, 그 상표를 신뢰하여 제품을 구매한 수요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임. 이처럼 상표 는 제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, 광고선전기능 및 제품의 품질을 보 증하는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.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의 소비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품질보증기능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.

따라서 수요자의 제품선택권 등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키 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본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, 그 등록된 상표와 동일·유사한 상표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상표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.

또한 2011년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의 최고한도인 5천만원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,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여 본 개정법이 시행된이후에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, 고의적인 경우에는 최대 3억원 이내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.

한편, 현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시장의 기준보다 낮게 산정되어 적정한 손해액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손해액을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'통 상 받을 수 있는 금액'에서 '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'으로 변 경함(안 제110조제4항).
- 나.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·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·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0조제7항 및 제8항 신설).
- 다.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(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)으로 상향함(안 제111조).
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0조제4항 중 "통상"을 "합리적으로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·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·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
-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
- 2.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
- 3.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
- 4.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
- 5. 침해행위의 기간 횟수 등
- 6.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
- 7.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

8.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11조제1항 전단 중 "5천만원"을 "1억원(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는 3억원)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소송에 관한 적용례) 제110조제7항 및 제8항,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 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10조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~ 제110조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~ ③ (생 략)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-----합리적으로----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⑤ ~ ⑥ (생 략) ⑤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 <신 설> 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 상표와 동일・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・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 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 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11조(법정손해배상의 청구) ①
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
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
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
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
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
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
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
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
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<u>5천만</u>
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

1.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.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 를 인식한 정도 3.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 규모 4.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. 침해행위의 기간 • 횟수 등 6.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.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 태 8.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 제 노력의 정도 제111조(법정손해배상의 청구) ① -----1억원(고

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

액을 손하	개액으로	하여	배상을
청구할 수	의다.	이 경-	우 법원
은 변론점	전체의 추	기기와	증거조
사의 결과	바를 고려	하여	상당한
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.			
② (생 호	략)		

원)
② (현행과 같음)